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84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 안규백·장종태·임종득

서영교 • 박선원 • 문진석

유동수 · 정진욱 · 김준혁

맹성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군인연금법」은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1984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그래서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은 연금 등의 지급에 있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약 3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1일 차이 등으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군 인연금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 고 임용된 부사관 등의 복무기간을 산입받지 못한 참전군인으로 함 (안 제3조).
- 나. 이 법에 따른 대상자 결정, 직업군인 복무기간 산정 및 연금지급 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1984 년9월30일이전퇴직참전군인연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 다. 복무기간의 산입 등은 1983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3587호 「군 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제5항 및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 병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에 산입함(안 제5조제1항).
- 라. 사병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퇴역연금·유족연금 등 연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함(안 제5조제2항).
- 마.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이 법에 따른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 추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위원회는 연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하며,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연금은 이를 환수하 도록 하고, 연금 지급을 받은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을 지급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군종, 장교후보생, 유격전 참전자 등의 복무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으로 산입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퇴직"이란 전역 퇴역 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 2. "연금"이란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83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현역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군종, 장교후보생, 유격전 참전자 등의 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 제5조제4항의 복무기간으로 산입 받지 못한 참전군인에게 그 복무기간을 산입함으로써 추가하여 지급하는 퇴역연금 등을 말한다.
- 3. "참전군인"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참전군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자) 이 법의 적용대상은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으로서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군종, 장교후보생 및 유격전 참전자 등의 복무기간(이하 "사병복무기간"이라한다)을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으로 산입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사병복무기간을 산입함으로써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
 - 2.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연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연금의 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1984년9월30일이 전퇴직참전군인연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연금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2.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 3. 적용대상자에 대한 연금지급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연금지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복무기간의 산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제5항 및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병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② 제1항의 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퇴역연금·유족연금 등 연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③ 제1항의 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하여 추가하여 받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일시금 형태의 급여에 대하여도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의 복무기간의 산입에 의한 퇴역연금·퇴역일시금 등 급여액의 산정, 지급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금지급 신청) ①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연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재심의)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연금지급) ① 연금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연금지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연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연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2조(소급기여금의 면제)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 중의 연금 미수령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산입기간 중의 미납기여금과 퇴직 당시 수령한 일시 퇴직금을 국고에 상환할 의무를 면제받는다.
 - ② 소급기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연금지급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금을 환수하는 경우 연금을 반환 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징 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연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1. 군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군 복무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제1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